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류분 상실신고 제도 도입 등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1호)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9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유류분 제도 개관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8
3.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11
4. 해외 입법례	13
5. 개정안에 대한 검토	19
6. 관계기관 의견	24

I. 제안경위

【 백혜련의원안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11.

【 권칠승의원안 】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백혜련의원안 】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개정).

【 권칠승의원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

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류분 상실신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양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에 관한 조항인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권철승의원안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 등의 유류분 상실 청구 외에도 피상속인이 유류분 상실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 행	백혜련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신고)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현 행	백혜련의원안	권철승의원안
	<u>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	<u>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u>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

현 행	백혜련의원안	권칠승의원안
	<u>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u> ④ <u>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u>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준용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제1008조--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준용한다.

현 행	백혜련의원안	권칠승의원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유류분 상실선고	15) 유류분 상실 선고

2. 유류분 제도 개관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1) 개관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의미하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지님.

헌법재판소의 결정(2024. 4. 25.) 이전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되어 있었음¹⁾.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발의배경 :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²⁾을 통해 유류분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위헌,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였음.

둘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셋째,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³⁾를

2) 2020헌가4 등, 2024. 4. 25.

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1118조⁴⁾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하여 유류분 상실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민법」 제1118조의 준용규정에 제1008조의2를 포함하려는 것임.

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3.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제20대 국회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과 일정 기간 이상 연락을 단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언으로써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류분 관련 법안]

구 분	발의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주요내용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06.22	2000398 (윤상현의원)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축소(직계비속·배우자 1/2 → 1/3, 직계존속·형제자매 1/3 → 1/4)
	2018.07.16	2014427 (이언주의원)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
	2019.10.07	2022811 (원혜영의원)	○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1/3로 축소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과 5년 이상 연락을 단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

제21대 국회에서는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제출되었으나, 주로 상속권 제한에 관한 사항만 논의되고 유류분 관련 내용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제출된 유류분 관련 법안]

구 분	발의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정부)	주요내용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11.12	2113279 (양정숙의원)	○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가 아닌 자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
	2022.04.07	2115141 (정부)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

4. 해외 입법례⁵⁾

아래에서는 주요 국가의 유류분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유류분 박탈사유를 위주로 살펴봄.

1) 독일

독일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을 인정하여 그 결과 추정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일민법상 유류분에 해당하는 의무분청구권은 의무분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에 인정됨⁶⁾.

독일민법상 의무분은 상속과 별개의 지위이므로 의무분에 대하여 별도의 박탈제도를 두고 있음. 의무분 박탈 사유는 당초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생명침해 기타 고의의 유책한 신체학대 또는 범죄·비행을 한 경우,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해태한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한 경우임. 이 외에 직계비속이 낭비를 하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의무분권을 제한하고 있기도 함⁷⁾.

5) 이하의 내용은 「유류분법의 입법론적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1.),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윤진수, 2021. 8.),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이진기, 20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0) 검토보고」(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 7.)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6) 의무분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남겨진 상속분이 의무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범위에서 의무분권을 지님.

7) < 독일 민법상 유류분 박탈사유 등 >

제2333조 ① 피상속인은 직계비속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직계비속에게서 의무분을 박탈할 수 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도 유언의 자유와 함께 상속인지정을 허용하고 있고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의무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상속인지정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적용함⁸⁾.

오스트리아 민법의 의무분 박탈 사유로는 의무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고의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때,

1.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다른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에게 비슷하게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2. 제1호에서 든 사람에 대하여 유책하게 범죄(Verbrechen) 또는 중대한 고의의 비행(Vergehen)을 한 경우
3.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
4. 고의의 범죄(Straftat)로 1년 이상의 가석방 없는 자유형이 확정되었고 직계비속의 상속재산에의 참여가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수인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직계비속의 비슷하게 중대한 고의의 행위로 인한 정신병원 또는 수용시설에의 (강제)수용(Unterbringung)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부모의 의무분과 배우자의 의무분의 박탈에 준용한다.

제2336조 ① 의무분의 박탈은 사인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② 박탈사유는 유언을 작성할 때에 현존하여야 하고 처분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233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박탈을 위하여는 유언을 작성할 때에 그 행위가 행하여져야 하고 기대불가능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들이 처분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박탈사유의 증명은 박탈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제2338조 ① 비속이 그의 장래의 취득이 현저히 위험하게 될 정도로 낭비하거나 채무초과한 때에는 피상속인은 비속이 사망한 후에 그의 법정상속인이 그에게 남겨진 재산이나 그에게 주어지는 의무분을 후상속인 또는 후수증인으로서 그의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취득할 것을 지시하여 비속의 의무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종류에 지시에 관하여 제2336조제1항에서

제2339조 ① 다음과 같은 자는 상속 자격이 없다.

1. 고의로 위법하게 피상속인을 죽게 하거나, 혹은 죽이려고 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사망할 때까지 사후 처분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한 자
2. 고의로 위법하게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방해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철회하도록 한 자
4.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관해서 형법 제267조 및 제271조에서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결정한 처분 혹은 범죄 행위에 의해 행해진 처분이 상속 개시 전에 무효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철회할 것으로 확정된 유언이 상속 개시 전에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결격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8) 상속권 박탈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의무분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의무분에 못미치는 재산만 받은 경우 부족분을 의무분으로 청구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에 대하여 고의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때, 고의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종의를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한 때, 피상속인에게 비난받을 방식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때, 그 밖에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및 1회 또는 수 회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종신 또는 2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때 등임.

아울러 오스트리아 민법은 의무분권 박탈 외에도 피상속인과 단 한 차례도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의 경우 피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와의 교류를 거부한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분을 1/2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9) < 오스트리아 민법상 유류분 박탈사유 >

제759조 의무분권자는 법정상속에 따라 그에게 귀속되었을 것의 반을 의무분으로 받는다.

[의무분권의 배제

I. 상속배제(Enterbung)

일반]

제769조 상속배제는 종의처분에 의한 의무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박탈이다.

[상속배제사유]

제770조 의무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오직 고의에 의해서만 범해질 수 있고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 동거인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그의 자녀,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 또는 동거인, 피상속인의 의붓 자녀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오직 고의에 의해서만 범해질 수 있고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의 진정한 종의(終意)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좌절시켰거나 좌절시키려고 한 경우 (제540조),
4. 피상속인에게 비난할 만한 방법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5. 기타 피상속인에 대한 가족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또는,
6. 고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로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진 경우.

[선의의 상속배제]

제771조 의무분권자의 채무초과 또는 낭비적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그에게 돌아갈 의무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그의 자녀에게 가지 아니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그의 자녀를 위하여 의무분을 박탈할 수 있다.

[사유의 표시방법 및 원인성]

제772조 (1) 상속배제는 명시적 또는 종의처분에서 간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포괄유증을 인정하고, 자유분을 규정하여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재산의 1/2, 두 명일 때에는 1/3, 세 명 이상일 때에는 1/4만을 처분할 수 있게 하면서 자유분을 초과한 때부터 그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됨.

프랑스 민법은 유류분이 상속권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유류분 박탈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속결격과 상속폐제가 있음. 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상해치사로 인하여 중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당연히 상속결격이 됨.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으로 인하여 경죄 판결을 받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

(2) 배제사유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배제한 원인이어야 한다.

[상속배제의 철회 및 용서]

제773조 (1) 상속배제는 철회될 수 있다. 이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이전에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유증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속배제를 명한 종의 처분의 철회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2) 피상속인이 흠결된 유언능력으로 인하여 상속배제를 더는 철회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을 용서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 상속배제는 무효가 된다.

[증명책임]

제774조 (1) 상속배제사유의 존재는 의무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상속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상속배제의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

[2. 의무분감축]

제776조 (1) 처분자는 그와 의무분권자가 단 한 순간도 또는 적어도 처분자 사망 전 상당한 기간 그러한 가족관계 사이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종의처분으로 의무분을 반으로 감축할 수 있다.

(2) 의무분감축권은 피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촉을 회피하였거나 접촉이 없었던데 정당한 계기가 있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773조 및 제774조는 의무분감축에 준용된다; 의무분감축은 종의처분에서 간과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명해질 수도 있다.

았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죄의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속인에 의한 상속결격 청구에 따른 재판으로 상속권이 상실됨¹⁰⁾).

4) 일본

일본의 경우 유류분이 인정되는 추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하거나, 그 밖에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의

10) < 프랑스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결격선고 제도 >

제72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1. 고의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서 중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고의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나 폭행을 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서 중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제72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결격자로 선고될 수 있다.

1. 고의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서 경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서 경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3. 형사소송에서 고인에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4.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인 신체의 완전성에 반하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고인이나 제3자에 대해 아무런 위험 없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막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 신고한 사실로 인해 고인에게 중범형이 부과된 경우, 고인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②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상속결격자로 선고될 수 있다.

제727-1조 제727조에서 정한 상속결격의 선고는 다른 상속인의 요청으로 지방법원이 상속의 개시를 선언한 후 판결된다. 요청은 유죄판결 또는 유죄선고가 사망보다 앞서는 경우 사망 후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또는 유죄선고가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 후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속인 부재 시, 해당 요청은 검사가 제기한다.

제728조 제726조 및 제727조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권자는 고인이 유언 형식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통해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상속권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거나 해당 상속권자에게 포괄 또는 부분포괄 무상처분을 실행함을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729조 상속결격에 따라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로부터 자신이 향유하던 모든 이익과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은 생존시에는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고, 사망시에는 유언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이 생긴 후 지체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함으로써 상속권 상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¹¹⁾).

11) < 일본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권 폐제 제도 >

제891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자는 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1.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에 관하여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형에 처해진 자
2. 피상속인이 살해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발하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은 자. 단, 그 자가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살해자가 자기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그것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그것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한 자
5.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제892조 유류분이 있는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93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추정상속인을 폐제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894조 ① 피상속인은 언제든지 추정상속인 폐제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추정상속인 폐제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895조 ① 추정상속인 폐제 또는 그 취소의 청구가 있을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 폐제의 유언이 있을 때에도 같다.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유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5.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총괄 검토 : 상속권 제한과 종합적인 논의 필요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¹²⁾를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되며, 상속자격이 상실될 경우 그의 유류분권도 상실됨. 현행법이 상속인 결격사유를 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인 등의 패륜행위 및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도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¹³⁾¹⁴⁾.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이 있어야 하는 현행 법체계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상속권 제한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상속권 상실사유 및 대상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개정안의

12)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3) 제22대 국회에서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있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8,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8,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 14) 참고로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나 전체회의가 개최하지 아니하여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유류분 상실사유를 모두 포섭할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권 역시 박탈할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상속권 제한 규정과 유류분 상실제도가 병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제도를 확충하면서 유류분 상실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편입시키고, 이 외 사유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사유로 규정하자는 주장임.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든 유류분 상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인 지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유류분상실시 별도로 상속권상실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있으므로, 우리 민법상 유류분권자의 상속인 지위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상실자의 상속인 지위 상실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함¹⁵⁾¹⁶⁾.

반면,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 허

15) 김상용·박인환,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 2021. 3.

16) 박인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 제한의 입법 방향”, 서영교의원실 주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3. 8. 21.

용되어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분리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상속인만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과 유류분을 분리하여 유류분만을 박탈하는 것이 개념상 불가능하고,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박탈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잔존하게 된다고 함.

이 경우 유류분을 박탈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증여에 의해 처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여전히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회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분담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함. 아울러 유류분 상실제도만 도입한다면 유증이나 증여와 같은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 박탈제도가 아닌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¹⁷⁾.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유류분 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법체계에서 유류분 상실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안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 현소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가족법연구 제35권 3호, 2021. 11.

2)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 준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 생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 제1008조의2제4항의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 요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의 경우 제1118조의 개정과 아울러 제1008조의2제4항에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므로¹⁸⁾,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현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민사

18)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생략)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준용한다.

사건이고, 기여분 결정심판청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¹⁹⁾에 해당하여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인바, 양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절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6.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①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상실 선고의 중복 규정은 체계상 바

19)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사사건화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198)」에서는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 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등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건을 동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판결과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198)」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과와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랍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②생전증여나 유증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패륜행위자인 경우, 유류분 상실 선고를 받아도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이 남아 있어 패륜 상속인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분 박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점²¹⁾ 등을 고려할 때 상속권 상실제도와 별도로 유류분 상실제도를 입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상실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패륜상속인의 유류분권만 상실시킬 것인지,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 청구 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1008조의2제4항을 정비하는 등 관련 「민법」 규정의 추가 개정 및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관할 정비²²⁾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A, B(패륜)가 있을 경우, ①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으로 모든 재산을 A에게 상속하기로 한 상태에서 B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면 B는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으나, ②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B의 유류분(1/4)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상속분(1/4)은 그대로 상속 가능

22) 앞서 각주 20)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198)」 참조

문 의 처
02)6788-5058